
2020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2020.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목 차



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세부 지침	1
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 제출	3
[참고1] 자주 묻는 질문 (FAQ)	5
[참고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트 안내	9
[참고3]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11
[참고4]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법령	12

1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내용 및 방법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교육 이수기준)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자료(동영상) 활용 가능(참고3)
 -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예방교육'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 교육 이수(참고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국가 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서 명시한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타기관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도 인정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자주 묻는 질문」 참고

3 기타 사항

- (강사선정)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강사자격 권장기준(필수 아님)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강사 추천 요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학대대응업무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아동학대와 연관된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연구, 강의 경력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주의사항) 공통기관(신고의무자 교육 대상기관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 대학병원,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등)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과는 별도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 필요

- 그 외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참고1)

문의 내용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및 동영상 자료* 탑재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02-6283-0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5,3384)

1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항
- (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교육점검 대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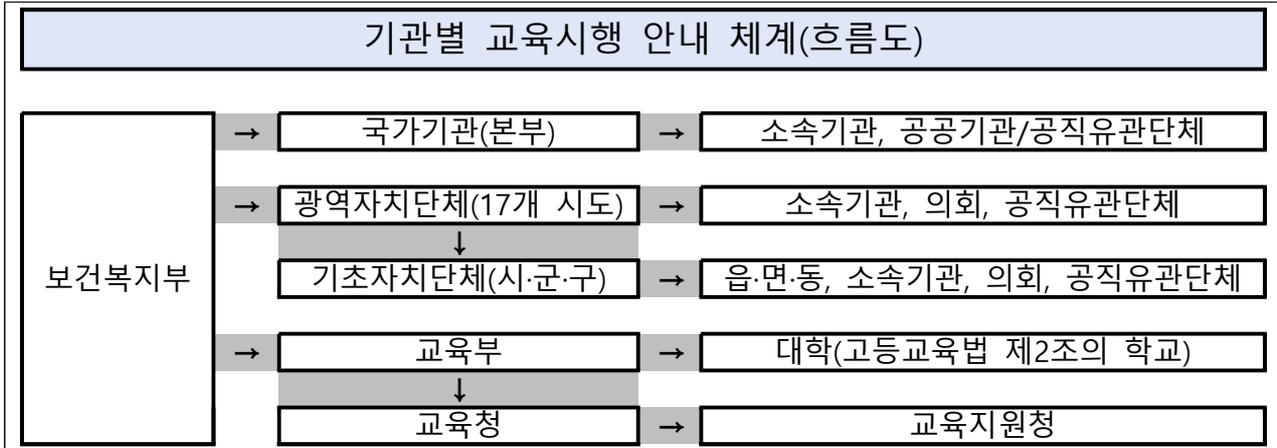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 전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목록 및 관할 기관 : [붙임 2]

3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0.1.1. ~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제출내용) 기관명, 교육일시·장소, 교육방법, 교육실적(수료 인원)
- (제출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가칭)」에 회원 가입 후 입력
 - 실적입력 주체 및 제출방식은 현재 개발 중인 위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후 '2020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제출' 안내시 재공지 예정('20.12월)
- (제출기한) 2021년 1월 1일 ~ 2월 28일
 - * 아동학대 예방교육 점검결과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하반기 국회 보고

④ 각 기관별 교육시행 및 교육실적 제출(시스템 입력) 안내

※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후 실적입력 주체 및 제출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20.12월 재공지)



①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담당부서에서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교육시행 안내

※ (실적제출) 본부 실적은 각 기관별로 입력하고, 소속기관 실적의 경우 중앙단위(1차 소속기관)에서 산하 소속기관의 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입력

*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부) 우정사업본부(1차 소속기관)는 본부 및 지방우정청(2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의 모든 실적을 취합하여 입력

②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광역)는 관할 시·군·구(기초)에, 시·군·구는 관할 읍·면·동에 교육시행을 안내하고, 17개 시·도 및 시·군·구는 소속기관, 의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교육시행 안내

※ (실적제출) 17개 시·도는 자체 및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적을, 시·군·구는 자체 및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입력

③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교육청에, 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시행 안내

※ (실적제출) 대학은 자체적으로 교육실적을 입력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자체 및 관할 직속기관의 교육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입력

④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사, 부설 등 소속기관에 교육실시 안내

※ (실적입력) 각 기관별로 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하되, 지사, 부설 등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단위에서 취합하여 입력

일반 사항

Q.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0.24.신설, 2019.1.1.시행]

Q.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A. 해당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Q.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제가 속한 기관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기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알리오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인사혁신처(www.mpm.go.kr)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며,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A.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교육의 이행결과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② :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Q.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소속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A. 공공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이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소속직원의 범위는 현 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 자원 봉사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Q. 교육자료 및 강사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 A. 동영상 자료 등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사이버교육 사이트 안내는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내 게시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선정된 전문 강사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집체교육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에 자율적으로 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탭'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세히 보기' 클릭 - 공공기관용 교육자료 - 교육자료 -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 ✓ (사이버 교육 사이트 안내)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탭'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세히 보기' 클릭 - 공공기관용 교육자료 - 공지사항 확인

Q. 아동권리보장원 내 동영상 자료를 저희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 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기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의 주요사례,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기관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콘텐츠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참고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트 안내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공기관 대상)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p>*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p>

2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공기관 대상)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p>*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p>

3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1. 늘배움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공공기관 대상)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 나의 학습이력 - 학습이력담기 - 학습이력증명서 출력

4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공공기관 대상)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1~3차시(총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 나의학습방 - 이수증 발급

5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국가기관 및 지자체

○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우 기관별 공동활용 신청을 통해 활용 가능

참고3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접속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자세히보기' 클릭



3. 공공기관용 교육자료에서 '2020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 다운로드 안내 게시글(공지1)' 클릭
4. 영상 다운로드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